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정 230 판결 의료법위반

## 대 구 지 방 법 원 김 천 지 원

## 판 결

사건	2013고정230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경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3.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은 면허된 것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13.부터 2012. 11. 30.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 원 침구실에서 위 한의원을 내원한 E 등 환자 35명의 등부위에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플라젠시아 2ml 앰플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였고,

2. 2010. 2 5.부터 2012.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내원한 F 등 환자 9명에게 봉주사 요법을 시술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약물을 주사기에 봉침약물원액과 식염수, 견정 등과 함께 4cc가량 혼합하여 넣고 환자들의 통증 주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메모지(리도카인혼합방-법), 태반주사환자내역, 거래명세표(플라젠시아), 적발현장사 진, 진료차트사본

1. 수사보고(리도카인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플라젠시아는 한방의 '자하거'와 같은 태반성분 으로서 한의사가 사용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면허 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도카인약물 사용이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장기간 사용한 점,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대상 환자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류경은